

의안번호	2214662
의 퇴 인	임미애 의원
회 답 일	2026. 4. 1.
추 계 번호	25B6397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3조(낙시진흥기본계획 등)	제1항에 따른 낙시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제3항) <u>5. 장애인의 낙시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신설></u>	의무규정
2	안 제45조(낙시 관련 산업 등의 지원·육성)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농어촌의 발전, 낙시인과 낙시 관련 업자 등의 권익 보호, 건전한 낙시문화의 조성, 장애인의 낙시 참여 활성화 및 낙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낙시 및 낙시 관련 산업을 지원·육성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43조(낙시진흥기본계획 등)	-	- 미대상 -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추가재정소요 없이 기존 예산으로 수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임 ※ 제3차 낙시진흥기본계획('25~'29) 수립을 위한 연 구용역비로 2억원 집행(용역기간 '24.5.~'24.12.)
2	안 제45조(낙시 관련 산업 등의 지원·육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장애인의 낙시 참여 활성화(안 제45조제1항)

-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업·농어촌의 발전, 낙시인과 낙시 관련 업자 등의 권익보호, 건전한 낙시문화

의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을 지원·육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1] 낚시관리 강화 사업 관련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내용	2024	2025	2026
낚시전문교육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 대상 법정 의무교육 운영	1,081	1,081	1,292
낚시어선 스마트 안전체계 구축	낚시어선 승선자 관리시스템 운영	500	500	700
낚시산업 통계조사	국가승인통계인 낚시어선 어획량 조사 수행	1,300	1,300	1,300
합계		2,881	2,881	3,292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개정안은 낚시 관련 산업 등의 지원·육성 대상에 장애인의 낚시 참여 활성화를 포함하려는 것으로,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인의 낚시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을 지원·육성하는 경우 이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현 시점에서는 개정안에 따른 장애인의 낚시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육성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아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Ⅲ. 부대의견

□ 없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김성원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성원	02-6788-4650	holyonet@assembly.go.kr